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b>선 람</b>	<b>기 관 의 장</b>

제353호 2012. 12. 10 (월요일)

##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075호      하동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2
- 하동군 규칙 제1076호      하동군 저소득주민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3
- 하동군 규칙 제1077호      하동군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규칙 ..... 4
- 하동군 규칙 제107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 ..... 6
- 하동군 규칙 제1079호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 개정규칙 .. 19
- 하동군 규칙 제1080호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 21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2- 5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9차)..... 27
- 하동군 고시 제2012- 57호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29
- 하동군 고시 제2012- 58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 32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2- 1020호      하동군 방재성능 목표 ..... 37
- 하동군 공고 제2012- 1035호      공사완료 공고 ..... 39

<b>회 람</b>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 2 ) 제 353 호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075호

하동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하동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용자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10일

##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076호

### 하동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하동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4 ) 제 353 호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10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077호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 개정규칙

하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6호를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37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당직실의 비품) (생략) 6. 관외 출타신고대장	제16조(당직실의 비품) (생략) <삭제>
제37조(관외출타신고) ① 소속기관 소재지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도지사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지역으로 출타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생긴 경우에는 군수는 도지사 또는 도청당직책임자에게 소속직원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출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행선지 2. 연락자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3. 출타 및 귀가예정시간 4. 출타사유	<삭제>
제38조(지역단위 기관장의 윤번제 대기)군 내 소재하고 있는 행정기관장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간의 당직 및 비상 연락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순번을 정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윤번제로 대기 근무 하되, 그 근무방법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해당지역안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삭제>
제39조(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을 때에는 제1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39조(직원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 ① ----- 제36조제2항 -----  -----  -

## 하 동 군 공 보

( 6 ) 제 353 호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10일

##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078호

###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2항 중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2항 단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항 중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으로 하며, “만점을 3퍼센트 이내로”를 “만점을 1퍼센트 이내로”로 한다.

제2항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에 법령에”를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로 한다.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2호”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로 하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또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 한다.

제14조 제4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를 “영 제17조제1항제4호”로 하고,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으로 하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삭제 한다.

제14조 제5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6호”를 “영 제17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4조 제5항 제3호 전문대학 졸업자 임용예정직급을 “7급·8급·연구사·기능직기능7급·기능8급”을 “7급·8급·지도사·기능직기능7급·기능8급”으로 한다.

제14조 제7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8호”를 “영 제17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4조 제9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다수인을 대상으로-----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를 “(다수인을 대상으로-----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항 중 “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을 “ [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으로 한다.

## 하 동 군 공 보

### ( 8 ) 제 353 호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를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제1항 2호 중 “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을 “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으로 한다.

또한, 제1항 3호 중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근무수당”을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으로 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중 “제17조제1항제10호”를 “영 제17조제1항 제11호”로,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을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으로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중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을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로, 제1항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를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로 한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중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며,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3(다면평가)을 삭제 한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제1항 중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를 “읍면으로 전보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용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제2항 중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실적 가점 부여 및 근무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를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제1항 중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장하여”를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로 하며, 제3항 중

## 하 동 군 공 보

( 10 ) 제 353 호

“교수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를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로 한다.  
또한, 제3항 3호를 삭제 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6급	7급	8급
별정직 보건진료원	6급상당 6년 이상	6급상당 6년 미만~6급 또는 7급상당 3년이상	7급상당 3년 미만 ~ 8급상당 3년 이상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13 ) 제 353 호

현 행	개 정 안																
<p>⑤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출신학렬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임용예정직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학졸업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6급·7급·연구사·기능직 기능6급·기능7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대학졸업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7급·8급·연구사·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고등학교졸업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9급·기능직기능9급이하</td> </tr> </tbody> </table> <p>⑥ (생략)</p> <p>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p> <p>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 - -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u>현재로 한다.</u></p> <p>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항 중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 - - - - .</p> <p>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 - - - -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출신학렬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기능직 기능6급·기능7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연구사·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기능직기능9급이하	<p>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 - - - -</p> <p>- - - - -</p> <p>- - - - -</p> <p>- - - - -</p> <p>-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출신학렬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임용예정직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 - - -</td> <td style="text-align: center;">- - - -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문대학졸업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 - - - <u>지도사</u> - - - -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 - - -</td> <td style="text-align: center;">- - - - -</td> </tr> </tbody> </table> <p>⑥ (현행과 같음)</p> <p>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 - - - -</p> <p>- - - - -</p> <p>- - - - - .</p> <p>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 - - - -</p> <p>(다수인을 대상으로 - - - - -</p> <p>- - - - - )</p> <p><u>현재로 한다.</u> - - - - -</p> <p>- - - - - .</p> <p>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 - - - -</p> <p>- - - - - [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p> <p>신규임용시험 - - - - - .</p> <p>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 - - - - 다음 각호와 같다.</p> <p>1.(현행과 같음)</p>	출신학렬별	임용예정직급	- - - - -	- - - - -	전문대학졸업자	- - - - <u>지도사</u> - - - - -	- - - - -	- - - - -
출신학렬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기능직 기능6급·기능7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연구사·기능직 기능7급·기능8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기능직기능9급이하																
출신학렬별	임용예정직급																
- - - - -	- - - - -																
전문대학졸업자	- - - - <u>지도사</u> - - - - -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 14 ) 제 353 호

현 행	개 정 안
<p>2. 특수환경 : - - - - - 제18호의 장려 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 - - - - - .</p> <p>3. 특수지역 : - - - - 제12조에 따른 특수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p> <p>② (생략)</p> <p>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 2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 - - - - - ,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호보자명부상의 - - - - - .</p> <p>② ~ ③ (생략)</p> <p>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① 영 제38조의4 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 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 책(군의 경우 도단위 이상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기여한 공무원</p>	<p>2. 특수환경 : - - - - - 제18호의 장려 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 - - - - - .</p> <p>3. 특수지역 : - - - -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 - - - - - - - - -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 - - - - 당해 기관 - - - - - - - - - - - - - - - .</p> <p>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 - - - - - - - - - - ,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호보자명부상의 - - - - -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① 영 제38조의4 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 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 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p>

하 동 군 공 보

( 15 ) 제 353 호

현 행	개 정 안
<p>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p> <p>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p>	<p>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 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p> <p>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p> <p>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p> <p>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p>
<p>제25조의3(다면평가) ① 영 제38조의5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그 밖에 다면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제25조의3 &lt; 삭제 &gt;</p>
<p>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7급공무원을 6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p> <p>&lt; 신 설 &gt;</p>	<p>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 - - - - - - - - - - - - - - - - - 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하 동 군 공 보

( 16 ) 제 353 호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의4 &lt; 신 설 &gt;</p> <p>제27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생략)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실적가점 부여 및 근무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 할 수 있다.</p> <p>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 -----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수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 2. (생략)                      3. 동일계급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생략)</p> <p>부칙                      제2조 &lt; 신 설 &gt;</p>	<p>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p> <p>제27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p> <p>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 -----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② (현행과 같음)                      ③ ----- 교수요원                      -----                      1. ~ 2. (현행과 같음)                      3. &lt; 삭 제 &gt;                      4. (현행과 같음)</p> <p>부칙 &lt; 2012. 9. 00 &gt;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 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p>



# 하 동 군 공 보

( 17 ) 제 353 호

현           행	개   정   안								
	<p>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 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 계급은 규칙 제14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th> <th style="text-align: center;">6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7급</th> <th style="text-align: center;">8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별정직 보건진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급상당 6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6급상당 6년 미만~6급 또는 7급상당 3년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7급상당 3년 미만 ~ 8급상당 3년 이상</td> </tr> </tbody> </table>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6급	7급	8급	별정직 보건진료원	6급상당 6년 이상	6급상당 6년 미만~6급 또는 7급상당 3년이상	7급상당 3년 미만 ~ 8급상당 3년 이상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6급	7급	8급						
별정직 보건진료원	6급상당 6년 이상	6급상당 6년 미만~6급 또는 7급상당 3년이상	7급상당 3년 미만 ~ 8급상당 3년 이상						

## 하 동 군 공 보

( 18 ) 제 353 호

[별표 1] <개정 94.1.10, 99.4.16, 05.5.16, 12.9 .>

###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 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10일

##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079호

###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일부 개정규칙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지정신청) 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7조(지정기간) ②항 및 ③항을 삭제하고, ④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서를 제출 공고하여 대행업을 다시 지정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 20 ) 제 353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정신청) ①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li> <li>2. 이력서</li> <li>3. &lt;삭제 1999.7.22.규876&gt;</li> <li>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li> <li>5. 재산증명서</li> <li>6. 공사용 기계 공구 명세서</li> <li>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li> </ol>	<p>제3조(지정신청) ①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현행과 같음)</li> <li>6. (현행과 같음)</li> <li>7. (현행과 같음)</li> </ol>
<p>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p> <p>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급수공사대행업 지정기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 범위내에서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지정 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지정기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제)</p> <p>③ (삭제)</p> <p>④ (신설)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서를 제출 공고하여 대행업을 다시 지정한다.</p>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10일

##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080호

###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

하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하 동 군 공 보

( 22 ) 제 353 호  
[별표]

하동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 (6점) - 국내 평가기관 (4점) <b>※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b>	35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9점) <b>※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9점)로 평가</b>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6점) <b>※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b> <b>※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b> - 대손충당금 적립율(안정성, 3점)	(25)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15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	(4)	
3. 주민이용 편의성	가. <b>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b> <b>※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b>	20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8)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20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 능력	가. <b>지역사회에 대한 기여</b>	10 (5)	
	나. <b>군과의 협력사업</b> <b>※ 실적 및 계획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b>	(5)	

[별지 제1호서식]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제7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금융기관별 점수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대 평가	(10)			
	- 국외 평가기관	(6)			
	- 국내 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5)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9)			
	-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7)			
	- 자기자본 이익율 (수익성)	(6)			
	- 대손충당금적립율(안정성)	(3)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	(4)			
3. 주민이용 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8)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0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능력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5)			

200 . . .

심사자 :

위원 (인)

하동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하 동 군 공 보

( 24 ) 제 353 호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금고지정 심의결과 집계표(제7조 관련)

금융기관명 :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득 점 합계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b>계</b>		<b>100</b>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	<b>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상태 평가</b>	<b>35</b>								
	- 국외 평가기관	(10)								
	- 국내 평가기관	(6)								
	- 국내 평가기관	(4)								
	<b>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b>	<b>(25)</b>								
	- BIS 자기자본비율	(9)								
	- 고정이하 여신비율	(7)								
- 자기자본 이익율	(6)									
- 대손충당금 적립율	(3)									
2. 자치단체 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b>가. 정기에금 예치금리</b>	<b>15</b>								
	(6)									
	<b>나. 공공예금 적용금리</b>	<b>(5)</b>								
<b>다.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금리</b>	<b>(4)</b>									
3. 주민이용 편의성	<b>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b>	<b>20</b>								
	(5)									
	<b>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b>	<b>(8)</b>								
<b>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b>	<b>(7)</b>									
4. 금고업무 관리능력	<b>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b>	<b>20</b>								
	(5)									
	<b>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b>	<b>(7)</b>								
	(7)									
<b>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 리 능력</b>	<b>(5)</b>									
(5)										
<b>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b>	<b>(3)</b>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능력	<b>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b>	<b>10</b>								
	(5)									
<b>나. 군과의 협력사업</b>	<b>(5)</b>									
(5)										

200 . . .

하동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하동군수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금고 지정방법 등) ① (생략)</p> <p>1. ~ 2. (생략)</p> <p>3. <u>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된 경상남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군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u></p> <p>4. <u>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지정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u></p> <p>5.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금고 지정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lt;삭제&gt;</p> <p>4. &lt;삭제&gt;</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하 동 군 공 보

( 26 ) 제 353 호

[별표 1] 하동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제6조 관련)		[별표 1] 하동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제6조 관련)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총계 100점)	평 가 항 목	배점기준 (총계 100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5	1. ----- -----	3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6점) - 국내 평가기관(4점) <u>&lt;신 설&gt;</u>	(10) 6 4	가. ----- ----- ----- <b>※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 평가</b>	(10) 6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9점) <u>&lt;신 설&gt;</u> - 무수익 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 이익율(수익성, 6점) <u>&lt;신 설&gt;</u>	(25) 9 7 6	나. -----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9점) <b>※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9점)</b>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6점) <b>※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b> <b>※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 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b>	(25) 9 7 6
<u>&lt;신 설&gt;</u>  - (생 략)	  3	- (현행과 같음)	3
2. (생 략) 가. ~ 다.(생략)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b>18</b>	2. (현행과 같음) 가. ~ 다.(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b>15</b>
3. 주민이용 편의성	<b>19</b>	3. -----	<b>20</b>
가. 관내 지점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	가. 관내지점의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b>※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 되는 지점은 제외</b>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u>(9)</u>	나. (현행과 같음)	<u>(8)</u>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u>(5)</u>	다. (현행과 같음)	<u>(7)</u>
4. 금고업무 관리능력	<b>18</b>	4. -----	<b>20</b>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	가. (현행과 같음)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u>(5)</u>	나. (현행과 같음)	<u>(7)</u>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5)	다. (현행과 같음)	(5)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라. (현행과 같음)	(3)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10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10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및 계획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나.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b>※ 실적 및 계획을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b>	(5)

하동군 고시 제2012 - 53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9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1. 29.

### 하동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49-1 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28 ) 제 353 호

###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7-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49-1	200706 18	하동군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608-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상신길 5-1	200706 18	정동과 상신의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768-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봉대길 100	200706 18	옛 중구의 금릉 봉황대의 황자를 빼고 봉대로 명명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26-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07-1	200706 18	하동군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군청앞을 지나가는 도로로 공공시설명 적용 도로명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탐리 38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가란길 16	200706 18	신선이 살면서 아름다운 여울에 낚시대를 담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36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404-6	200706 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675-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상덕길 46-83	200706 18	상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559-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143	200706 18	명호입구부터 절골까지 도로가 명사길이라 불리워졌기때문에 명사길로 명명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478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대밭땀길 30-23	200706 18	대밭이질어 대밭땀이라고 불리워져 대밭땀길로 명명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286-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624	200707 02	하동군옥종면과산청군단성면의 첫글자를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1082-1	경상남도 하동군횡천면 횡천강변길23	200804 02	횡천강을 끼고 있다하여 횡천강변길로 명명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995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선소길 38-21	200804 02	하동을 지키는 관방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19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서재길 81-54	200903 02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서재골 지역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탐리 25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11	200903 02	마을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산131-3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40-49	200907 02	삼신봉과 산청군과 연결되는 삼신봉터널 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136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670-19	200907 10	19번구도의일부로서,섬진강을 따라형성된도로로 지역명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12-57호

##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일

# 하 동 군 수

###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지정목적 상실

###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임야 소재지					종류	지정년도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산림 소유자
도	군	면	리	지번					
경남	하동	고전	성평	산11	풍치보안림	1979.1.30	147,669	147,669	하동군
경남	하동	고전	성평	산13	풍치보안림	1979.1.30	413,256	413,256	하동군
경남	하동	금남	덕천	산77-2	풍치보안림	1979.1.30	11,802	11,802	정성훈
경남	하동	금남	덕천	산78	풍치보안림	1979.1.30	36,198	36,198	고순열외6인
경남	하동	금남	덕천	산79	풍치보안림	1979.1.30	110,083	110,083	하동군
경남	하동	금남	덕천	산83-3	풍치보안림	1979.1.30	7,835	7,835	강기욱
경남	하동	금성	궁항	산50-1	풍치보안림	1979.1.30	30,446	30,446	김미경외3인
경남	하동	금성	궁항	산50-2	풍치보안림	1979.1.30	30,545	30,545	김정선
경남	하동	금성	궁항	산51	풍치보안림	1979.1.30	16,682	16,682	이동희외2인
경남	하동	금성	궁항	산52	풍치보안림	1979.1.30	30,877	30,877	진정현
경남	하동	금성	궁항	산54	풍치보안림	1979.1.30	26,281	26,281	김홍운

## 하 동 군 공 보

( 30 ) 제 353 호

임야 소재지					종류	지정년도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산림 소유자
도	군	면	리	지번					
경남	하동	금성	궁항	산55	풍치보안림	1979.1.30	44,628	44,628	김미경
경남	하동	금성	궁항	산57	풍치보안림	1979.1.30	25,785	25,785	김해김씨감 무공파종중
경남	하동	금성	궁항	산58	풍치보안림	1979.1.30	29,256	29,256	이광용
경남	하동	금성	궁항	산59-3	풍치보안림	1979.1.30	1,388	1,388	최명화
경남	하동	금성	궁항	산59-4	풍치보안림	1979.1.30	11,802	11,802	최명화
경남	하동	북천	사평	산101-1	풍치보안림	1979.1.30	15,868	15,868	김창우
경남	하동	북천	사평	산101-2	풍치보안림	1979.1.30	10,909	10,909	김환오외2인
경남	하동	북천	사평	산102	풍치보안림	1979.1.30	24,793	24,793	문병일외2인
경남	하동	북천	사평	산104	풍치보안림	1979.1.30	16,264	16,264	권경태
경남	하동	북천	직전	산10	풍치보안림	1979.1.30	56,236	56,236	박유림
경남	하동	북천	직전	산10-1	풍치보안림	1979.1.30	12,090	12,090	박유림
경남	하동	북천	직전	산10-2	풍치보안림	1979.1.30	38,697	38,697	김기수외2인
경남	하동	북천	직전	산10-3	풍치보안림	1979.1.30	48,794	48,794	문형우외2인
경남	하동	북천	직전	산10-4	풍치보안림	1979.1.30	6,842	6,842	서진원
경남	하동	북천	직전	산10-5	풍치보안림	1979.1.30	58,428	58,428	김준규외2인
경남	하동	북천	직전	산10-6	풍치보안림	1979.1.30	1,062	1,062	손영규
경남	하동	북천	직전	산12-1	풍치보안림	1979.1.30	66,721	66,721	김석종외2인
경남	하동	북천	직전	산12-6	풍치보안림	1979.1.30	1,983	1,983	김재준
경남	하동	북천	직전	산103	풍치보안림	1979.1.30	7,967	7,967	서진원
경남	하동	북천	직전	산103-2	풍치보안림	1979.1.30	31,405	31,405	오효성
경남	하동	북천	직전	산117	풍치보안림	1979.1.30	169,488	169,488	경상남도 교육감
경남	하동	북천	직전	산123	풍치보안림	1979.1.30	42,446	42,446	문식근
경남	하동	북천	직전	산124	풍치보안림	1979.1.30	105,719	105,719	문광근외2인

※ 지정 및 해제면적은 지정 당시 면적을 표기하였으며, 소유자는 현재의 소유자 임.

### 3. 관계도면 : 생략

(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

**4. 산지의 구분 : 임업용산지**

( 「산지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익용산지에서 임업용산지로 지정)

**5. 열람장소 : 하동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지정해제 도·서는 하동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055-880-2482)에 비치하고 있음

**6. 이의신청 : 없음**

**7. 지정해제 연월일 : 해제 고시한 날로부터.**

## 하 동 군 공 보

( 32 ) 제 353 호

하동군 고시 제2012-58호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6일

## 하 동 군 수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종선좌표	횡선좌표	종선좌표	횡선좌표
2850	금성면 궁항리	164628.31	272474.04		
2851	금성면 궁항리	164433.70	272539.14		
2852	금성면 궁항리	164328.03	272683.88		
2853	금성면 궁항리	164130.79	272704.64		
2854	금성면 궁항리	163943.06	272726.45		
2855	금성면 가덕리	163846.06	272824.77		
2856	금성면 궁항리	163668.82	272771.51		
2857	금성면 가덕리	163613.63	272858.79		
2858	금성면 가덕리	163430.73	272843.11		
2859	금성면 가덕리	163330.93	272846.35		
2860	금성면 궁항리	163200.93	272701.64		
2861	금성면 궁항리	163002.97	272724.26		



## 하 동 군 공 보

( 33 ) 제 353 호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종선좌표	횡선좌표	종선좌표	횡선좌표
2862	금성면 공항리	162842.94	272742.09		
2863	금성면 공항리	162647.97	272763.90		
2864	금성면 가덕리	162511.03	272662.01		
2865	금성면 가덕리	162326.10	272596.11		
2866	금성면 가덕리	162121.20	272651.92		
2867	금성면 가덕리	161908.47	272701.15		
2868	금성면 갈사리	161833.75	272487.85		
2869	옥종면 공항리	189941.33	274216.25		
2870	옥종면 공항리	189939.73	274094.27		
2871	옥종면 공항리	189883.43	273883.11		
2872	옥종면 공항리	189849.29	273764.09		
2873	옥종면 공항리	189749.20	273645.14		
2874	옥종면 공항리	189740.57	273563.47		
2875	옥종면 공항리	189761.85	273449.42		
2876	옥종면 공항리	189777.48	273351.92		
2877	옥종면 공항리	189744.83	273100.95		
2878	옥종면 공항리	189721.98	272968.18		
2879	옥종면 공항리	189728.13	272851.05		
2880	옥종면 공항리	189775.12	272818.92		
2881	옥종면 공항리	189923.49	272621.85		
2882	옥종면 공항리	190057.63	272420.19		
2883	옥종면 공항리	190054.49	272276.31		
2884	옥종면 공항리	190076.27	272161.46		
2885	금남면 대도리	160073.47	276075.96		
2886	금남면 대도리	159664.40	276062.27		
2887	금남면 대도리	159533.81	275998.98		

## 하 동 군 공 보

( 34 ) 제 353 호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중선좌표	횡선좌표	중선좌표	횡선좌표
2888	금남면 대도리	159428.95	276094.06		
2889	금남면 대도리	159247.64	276184.06		
2890	금남면 대도리	160150.09	276104.88		
2891	금남면 대도리	160245.89	276062.55		
2892	금남면 대도리	160215.38	276037.44		
2893	금남면 대도리	160135.63	276045.27		
2894	금남면 대도리	159967.67	276053.33		
2895	금남면 대도리	159942.66	276020.05		
2896	금남면 대도리	159924.95	275955.69		
2897	금남면 대도리	159819.46	275909.52		
2898	금남면 대도리	159656.92	275901.62		
2899	금남면 대도리	159531.22	275862.47		
2900	금남면 대도리	159478.23	275859.54		
2901	금남면 대도리	159409.88	275858.72		
2902	금남면 대도리	159393.44	275880.95		
2903	금남면 대도리	159427.64	275946.32		
2904	금남면 대도리	159392.25	275993.63		
2905	금남면 대도리	159377.04	276029.67		
2906	금남면 대도리	159240.72	276092.75		
2907	금남면 대도리	159127.18	275997.58		
2908	금남면 대도리	159087.49	276135.32		
2909	금남면 대도리	159123.81	276166.91		
2910	양보면 지례리	170928.08	279511.47		
2911	양보면 지례리	170891.43	279449.46		
2912	양보면 지례리	170878.28	279381.13		
2913	양보면 지례리	170873.14	279243.70		

## 하 동 군 공 보

( 35 ) 제 353 호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종선좌표	횡선좌표	종선좌표	횡선좌표
2914	양보면 지례리	170902.84	279110.05		
2915	양보면 지례리	170922.18	279077.14		
2916	양보면 지례리	171329.70	279141.17		
2917	양보면 지례리	171278.12	279142.58		
2918	양보면 지례리	171172.78	279107.62		
2919	양보면 지례리	171096.25	279106.48		
2920	양보면 지례리	170941.56	279038.20		
2921	양보면 지례리	170927.20	278937.16		
2922	양보면 지례리	170917.48	278853.00		

폐기된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6일

## 하 동 군 수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종선좌표	횡선좌표	종선좌표	횡선좌표
1	하동읍 광평리	174231.86	268055.08		
12	하동읍 읍내리	174800.36	267472.83		
20	하동읍 화심리	176082.07	266614.58		
50	하동읍 읍내리	174943.26	268424.61		
145	하동읍 읍내리	175068.17	268572.12		
153	하동읍 비파리	175106.25	268742.33		
353	악양면 중대리	186574.67	265323.08		
기 준 점 명		중 부 원 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하동군청 열린민원실 (055-880-2091)			
비 고		망실 폐기분			

## 하 동 군 공 보

( 36 ) 제 353 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6일

## 하 동 군 수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토지소재지	지역측지계(Bessel)		세계측지계(Grs80)	
		종선좌표	횡선좌표	종선좌표	횡선좌표
보39	화개 부춘	184927.63	259423.18	285235.65	259497.10
보40	화개 부춘	184882.84	259932.17	285190.89	260006.09
보41	화개 부춘	185270.69	260551.00	285578.77	260624.90
보42	화개 부춘	184951.88	260550.07	285259.96	260623.99
보43	화개 부춘	184454.26	260250.88	284762.32	260324.82
보44	화개 부춘	184225.39	260835.86	284533.49	260909.81
기 준 점 명		중 부 원 점		-	
측량성과 보관장소		하동군청 민원과 (055-880-2091)			
비 고		검두지구 지적재조사 신설			

하동군 공고 제2012-1020호

## 하동군 방재성능목표 공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동군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 하 동 군 수

1. 목 적 : 도심지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 방재성능을 발휘토록 방재성능목표를 설정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방재성능목표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동군	80mm	125mm	155mm

#### 4.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제방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거
  -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시설 중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설

## 하 동 군 공 보

( 38 ) 제 353 호

### 5.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 도시지역 내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적용
- 하수관거, 저류지, 펌프장 등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시 적용
- 방재성능 평가 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유출량 산정은 합리식, RRL 모형, ILLUDAS 모형, SWMM 모형을 활용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

###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부터

하동군 공고 제 2012-1035호

## 공 사 완 료 공 고

화산 도시계획도로 (종로3-1호,소로3-12호) 개설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하오며, 관계도서는 하동군 도시건축과에 비치 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2. 12.

### 하 동 군 수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지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하동군 계획시설사업 (도로, 종로3-1호, 소로3-12호선)
  - 명 칭 : 화산 도시계획도로 (종로3-1호, 소로3-12호선) 개설공사
3.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하동군수 조 유 행
4.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1공구(종로3-1호) L=91m, B=12m  
2공구(소로3-12호) L=75m, B= 8m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2012. 02. 22 ~ 2012. 11. 12.